

2024 이패스코리아 AFPK 부교재 5종 정오사항

[업데이트 일자 : 2024.08.06]

요약집 모듈1			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일자
35p 하2	주거관련부채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거관련부채상환 비율을 계산할 때는 ~	[오탈자 수정] 주거관련부채상환 → 주거관련부채상환	24.08.06
79p 상2	나. 과태료 6대 판매규제 위반. 내부통제기준 미수립, 계약서로 제공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	[문장부호 수정] 위반. → 위반,	24.08.06
95p 상5	마. 제5단계 : 재문설계 제안서의 실행	[오탈자 수정] 재문설계 → 재무설계	24.08.06

요약집 모듈2			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일자
201p 상5	6 국선대리인제도(개인에게 적용)	[문구 수정] 국선대리인제도(개인에게 적용) → 국선대리인제도 괄호 문구 삭제	24.08.06
201p 하1	④ 법인은 적용 제외, 상속세 및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는 제외	[문구 수정] 법인은 적용 제외 , 상속세 및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→ 상속세 및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는 제외	24.08.06

문제집 모듈1			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일자

문제집 모듈2			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일자

최종실전모의고사																		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일자															
125p 문149 보기2	149 다음 중 주식연계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<table><tr><th></th><th>구분</th><th>전환사채</th><th>교환사채</th><th>신주인수권부사채</th></tr><tr><td>㉠</td><td>발행회사 자본금</td><td>증가</td><td>불변</td><td>증가</td></tr><tr><td>㉡</td><td>발행회사 자산</td><td>불변</td><td>불변</td><td>증가</td></tr></table>		구분	전환사채	교환사채	신주인수권부사채	㉠	발행회사 자본금	증가	불변	증가	㉡	발행회사 자산	불변	불변	증가	[문구 수정] 교환사채 불변 → 교환사채 감소	24.08.06
	구분	전환사채	교환사채	신주인수권부사채														
㉠	발행회사 자본금	증가	불변	증가														
㉡	발행회사 자산	불변	불변	증가														
198p 문188 보기3	③ 사적연금소득 총수령액이 연간 1,200만 원 초과할 경우 반드시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니며, 한계세율을 고려하여 15%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.	[문구 수정] 연간 1,200만 원 → 연간 1,500만 원	24.08.06															
208p 문50 해설	핵심키워드 은퇴자신 인출 전략	[오탈자 수정] 은퇴자신 → 은퇴자산	24.08.06															
324p 문49 해설	[주식연계채권] <table><tr><th></th><th>구분</th><th>전환사채</th><th>교환사채</th><th>신주인수권부사채</th></tr><tr><td>㉠</td><td>발행회사 자본금</td><td>증가</td><td>불변</td><td>증가</td></tr><tr><td>㉡</td><td>발행회사 자산</td><td>불변</td><td>불변</td><td>증가</td></tr></table>		구분	전환사채	교환사채	신주인수권부사채	㉠	발행회사 자본금	증가	불변	증가	㉡	발행회사 자산	불변	불변	증가	[문구 수정] 교환사채 불변 → 교환사채 감소	24.08.06
	구분	전환사채	교환사채	신주인수권부사채														
㉠	발행회사 자본금	증가	불변	증가														
㉡	발행회사 자산	불변	불변	증가														
405p 문188 해설	[연금계좌 수령시 과세체계] 1) 연금수령 시 과세 : 연금소득세 <table><tr><th>소득원천</th><th>세금의 종류</th><th>세율</th><th>종합소득 합산 여부</th></tr><tr><td>이연퇴직소득</td><td rowspan="2">연금소득세</td><td>퇴직소득세율 × 70%(60%) (연금실수령연차 11부터는 60%)</td><td>합산하지 않음 (무조건 분리과세)</td></tr><tr><td>그 외 소득 (운용수익 및 공개받은 자기부담금)</td><td>원천징수세율 3~5%</td><td>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,200만 원 초과 시 합산 또는 분리과세(15%)</td></tr></table>	소득원천	세금의 종류	세율	종합소득 합산 여부	이연퇴직소득	연금소득세	퇴직소득세율 × 70%(60%) (연금실수령연차 11부터는 60%)	합산하지 않음 (무조건 분리과세)	그 외 소득 (운용수익 및 공개받은 자기부담금)	원천징수세율 3~5%	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,200만 원 초과 시 합산 또는 분리과세(15%)	[문구 수정] 1,200만원 → 1,500만 원	24.08.06				
소득원천	세금의 종류	세율	종합소득 합산 여부															
이연퇴직소득	연금소득세	퇴직소득세율 × 70%(60%) (연금실수령연차 11부터는 60%)	합산하지 않음 (무조건 분리과세)															
그 외 소득 (운용수익 및 공개받은 자기부담금)		원천징수세율 3~5%	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,200만 원 초과 시 합산 또는 분리과세(15%)															